

1. 개정 이유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양식제한조치의 절차,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33088호, 2022. 12. 20., 공포, 2023. 2. 28., 시행) 및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2. 28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양식제한조치의 절차,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3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18조의3제2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37조의11제3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37조의13제1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14제1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37조의17제3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,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4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양식제한조치의 절차) ① (생 략) ②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 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</u> 장에게 알려야 한다.	제18조의2(양식제한조치의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</u> <u>해야</u> -----.
제18조의3(수산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) ① (생 략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<u>국립수산물</u> <u>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</u> 한다.	제18조의3(수산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</u> <u>장관에게 보고해야</u> -----.
제37조의11(수산물질병관리원의 개 설) ①·② (생 략)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 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 의10서식의 신고필증(이하 “신	제37조의11(수산물질병관리원의 개 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고필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게 알려야</u> 한다.	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</u> 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13(휴업·폐업의 신고서)	제37조의13(휴업·폐업의 신고서)
①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 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 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 4호의12서식의 신고서에 신고 필증(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)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, 신고 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그 사본을 <u>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</u> 송부해야 한 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 장관</u> ----- 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14(공수산질병관리사) ①	제37조의14(공수산질병관리사) ①
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</u>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 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	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② 시·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 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알려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--- <u>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야</u> -----.
제37조의17(연수교육) ①·② (생 략)	제37조의17(연수교육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③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 수교육 계획을 <u>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에게</u>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해당 연도의 연수 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 까지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</u> 보고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3조(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 의 위촉) ① ~ ③ (생 략)	제43조(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 의 위촉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<u>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</u> 이 정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해양 수산부장관</u> -----.